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0. . . (제 회)	

형 의 집 행 및 수 용 자 의 처 우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추미애 (법무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 제 처 심 사 전

1. 의결주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 개정(법률 제16925호, 2020. 2. 4. 공포, 2020. 8. 5. 시행)을 통해 석방예정자의 수용이력 등을 경찰관서 등에 통보할 수 있는 근거조항인 「형집행법 시행령」 제143조가 법률로 상향입법됨에 따라 법률과 중복되는 위 조항을 삭제함과 동시에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같은 조에 신설하고, 법 문장 중 어려운 한자로 된 용어를 쉬운 용어나 우리말 표현으로 바꾸어 국민이 법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석방예정자의 수용이력 등 통보에 관한 중복내용 삭제 및 위임사항 규정(안 제143조)

- 1) 형집행법 개정을 통해 석방예정자의 수용이력 또는 사회복귀에 관한 의견을 그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나 자립을 지원할 법인 등에 통보할 수 있는 규정(형집행법 시행령 제143조)이 법률로 상향입법(제126조의2) 되면서, “수용이력” 및 “사회복귀에 관한 의견”의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2) 이에, 형집행법 제126조의2의 신설로 인해 중복되는 조항(형집행법 시행령 제143조)을 삭제함과 동시에,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인 “수용이력” 및 “사회복귀에 관한 의견”의 구체적 사항을 같은 조에 규정함.

3) 또한 “수용이력” 및 “사회복귀에 관한 의견”을 통보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각 통보서의 양식을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으로써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나. 어려운 용어 순화

“영치”, “서신” 등 어려운 한자로 된 용어를 각 “보관”, “편지” 등 쉬운 용어나 우리말 표현으로 바꾸어 국민이 법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전, 특기할 사항 없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중 “영치”를 “보관”으로 한다.

제34조제2항 및 제3항 중 “영치”를 각각 “보관”으로 한다.

제35조의 제목 “(금품의 영치)”를 “(금품의 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영치하는”을 “보관하는”으로, “영치금대장”을 “보관금대장”으로, “영치하는”을 “보관하는”으로, “영치품대장”을 “보관품대장”으로 한다.

제36조 중 “영치품”을 “보관품”으로 한다.

제37조의 제목 “(영치품 매각대금의 영치)”를 “(보관품 매각대금의 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영치품”을 “보관품”으로, “영치할”을 “보관할”로 한다.

제38조의 제목 “(영치금의 사용 등)”을 “(보관금의 사용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영치금”을 각각 “보관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영치금의 출납·예탁(預託), 영치금품”을 “보관금의 출납·예탁(預託), 보관금품”으로 한다.

제39조의 제목 “(소지범위 초과 물품의 처리)”를 “(지닐 수 없는 물품의 처리)”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법 제26조제2항”을 “수용자의 물품 중 법 제26조제2항”으로, “소지범위를 벗어난 수용자의 물품을”을 “수용자가 지닐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로 한다.

제41조의 제목 “(금품교부 신청자의 확인)”을 “(금품전달 신청자의 확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교부하려고”를 “건네줄 것을”로 한다.

제42조의 제목 “(교부허가금품의 사용 등)”을 “(전달허가금품의 사용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금품의 교부를”을 “수용자에게 금품을 건네줄 것을”로, “영치한 후”를 “보관한 후 해당 수용자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교부하려고”를 “건네주려고”로 한다.

제43조의 제목 “(교부 허가물품의 검사)”를 “(전달 허가물품의 검사)”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전단 중 “교부를”을 “수용자에게 건네줄 것을”로 한다.

제44조의 제목 “(영치의 예외)”를 “(보관의 예외)”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영치”를 “보관”으로 한다.

제45조의 제목 “(유류금품의 교부)”를 “(유류금품의 처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교부받”을 “건네받”으로 한다.

제56조의 제목 “(중환자의 가족 통지)”를 “(위독 사실의 알림)”으로 한다.

제2편 제5장의 제목 “접견, 서신수수 및 전화통화”를 “접견, 편지수수(便

紙授受) 및 전화통화”로 한다.

제64조의 제목 “(서신수수의 횡수)”를 “(편지수수의 횡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서신은”을 “편지는”으로 한다.

제65조의 제목 “(서신 내용물의 확인)”을 “(편지 내용물의 확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제2호 및 제3호 중 “서신을”을 각각 “편지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서신”을 “편지”로 한다.

제66조의 제목 “(서신 내용의 검열)”을 “(편지 내용의 검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중 “서신을”을 각각 “편지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서신에”를 “편지에”로 하고, 같은 항 중 “서신을”을 각각 “편지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서신이”를 “편지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서신의”를 “편지의”로, “발신서신은”을 “발신편지는”으로, “수신서신은”을 “수신편지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서신”을 “편지”로 한다.

제68조의 제목 “(서신 등의 대서)”를 “(편지 등의 대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서신”을 “편지”로 한다.

제69조의 제목 “(서신 등 발송비용의 부담)”을 “(편지 등 발송비용의 부담)”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서신·소송서류”를 “편지·소송서류”로 한다.

제71조 중 “서신수수”를 “편지수수”로 한다.

제76조제1항 중 “도화”를 “도화(圖畵)”로 한다.

제128조의3제1항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한다.

제133조제2항 본문 중 “서신수수”를 “편지수수”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통지를”을 “알리는 것을”로 한다.

제140조의 제목 “(가석방자 준수사항의 고지 등)”을 “(가석방자가 지켜야 할 사항의 알림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준수사항”을 “지켜야 할 사항”으로 한다.

제143조의 제목 “(석방예정자의 교정성적 등 통보)”를 “(석방예정자의 수용이력 등 통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126조의2제2항에 따른 “수용이력”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수형자 특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민등록주소(또는 거소), 석방 후 거주지 주소
2. 수용이력에 관한 사항: 죄명, 범수, 형명, 형기, 석방종류, 최초입소일, 형기종료일, 출소일, 범죄개요, 기타 수용 중 특이사항으로서 해당 수형자의 재범방지, 피해자보호를 위해 특히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

② 법 제126조의2제2항에 따른 “사회복귀에 관한 의견”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수형자 특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민등록주소(또는 거소), 석방 후 거주지 주소

2. 사회복지에 관한 의견: 수용기간 중 직업훈련 내역, 수상이력, 학력 변동사항, 자격증 취득에 관한 사항, 기타 해당 수형자의 자립지원을 위해 특히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

③ 석방예정자의 수용이력·사회복지에 관한 의견 통보서의 양식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④ 석방예정자의 수용이력 또는 사회복지에 관한 의견을 그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통보하는 경우,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해 통보할 수 있다.

제145조의2의 제목 “(증명서의 교부)”를 “(증명서의 발급)”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부”를 “발급”으로 한다.

제146조의 제목 “(사망통지)”를 “(사망 알림)”으로 한다.

제151조제3항 중 “준수사항”을 “지켜야 할 사항”으로 한다.

제152조의 제목 “(외부인사의 준수사항)”을 “(외부인사가 지켜야 할 사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2조(자비 구매 의류등의 사용) 소장은 수용자가 자비로 구매한 의류등을 <u>영치</u> 한 후 그 수용자가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자비 구매 의류등의 사용) ----- ----- <u>보관</u> ----- -----.
제34조(휴대금품의 정의 등) ① (생략) ② 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신입자의 휴대품은 <u>영치</u> 한 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③ 법 제2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입자의 휴대품을 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u>영치</u> 할 수 있다. ④ (생략)	제34조(휴대금품의 정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보관</u> ----- -----. ③ ----- ----- ----- ---- <u>보관</u> -----. ④ (현행과 같음)
제35조(<u>금품의 영치</u>) 수용자의 현금을 <u>영치하는</u> 경우에는 그 금액을 <u>영치금대장</u> 에 기록하고 수용자의 물품을 <u>영치하는</u> 경우에는 그 품목·수량 및 규격을 <u>영치품대장</u> 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35조(<u>금품의 보관</u>) ----- --- <u>보관하는</u> ----- --- <u>보관금대장</u> ----- ----- <u>보관하는</u> ----- ----- <u>보관품대장</u> -----.
제36조(귀중품의 보관) 소장은 <u>영치품</u> 이 금·은·보석·유가증권·인장, 그 밖에 특별히 보관	제36조(귀중품의 보관) ----- <u>보관품</u> ----- -----

할 필요가 있는 귀중품인 경우에는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견고한 용기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제37조(영치품 매각대금의 영치) 소장은 수용자의 신청에 따라 영치품을 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영치할 수 있다.

제38조(영치금의 사용 등) ① 소장은 수용자가 그의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도움을 주거나 그 밖에 정당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영치금의 사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정을 고려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영치금을 사용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수용자가 부담한다.

③ 영치금의 출납·예탁(預託), 영치금품의 보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39조(소지범위 초과 물품의 처

---.

제37조(보관품 매각대금의 보관) -----
-- 보관품-----
----- 보관
할 -----.

제38조(보관금의 사용 등) ① ---

----- 보관금-----

-----.

② ----- 보관금-----

-----.

③ 보관금의 출납·예탁(預託),
보관금품-----

---.

제39조(지닐 수 없는 물품의 처

리) 법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소지범위를 벗어난 수용자의 물품을 처분하거나 폐기하는 경우에는 제34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41조(금품교부 신청자의 확인)

소장은 수용자가 아닌 사람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수용자에게 금품을 교부하려고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의 성명·주소 및 수용자와의 관계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2조(교부허가금품의 사용 등)

① 소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금품의 교부를 허가한 경우에는 그 금품을 영치한 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수용자에게 교부하려고 하는 금품의 허가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43조(교부 허가물품의 검사) 소

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교부를 허가한 물품은 검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교도관으로 하여금 검사

리) 수용자의 물품 중 법 제26조제2항 -- 수용자가 지닐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

-----.

제41조(금품전달 신청자의 확인)

----- 건네줄 것을 -----

-----.

제42조(전달허가금품의 사용 등)

① -----
--- 수용자에게 금품을 건네줄 것을 ----- 보관한 후 해당 수용자에게 ---.

② -----
----- 건네주려고 -----

-----.

제43조(전달 허가물품의 검사) --

----- 수용자에게 건네줄 것을 -----

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물품이 의약품인 경우에는 의무
관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제44조(영치의 예외) 음식물은 영
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제45조(유류금품의 교부) ① 소장
은 사망자의 유류품을 교부받을
사람이 원거리에 있는 등 특별
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유류
품을 받을 사람의 청구에 따라
유류품을 팔아 그 대금을 보낼
수 있다.

② (생 략)

제56조(중환자의 가족 통지) (생
략)

제5장 접견, 서신수수 및
전화통화

제64조(서신수수의 횡수) 수용자
가 보내거나 받는 서신은 법령
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횡수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65조(서신 내용물의 확인) ①
수용자는 서신을 보내려는 경우
해당 서신을 봉합하여 교정시설
에 제출한다. 다만, 소장은 다음

-----.

---.

제44조(보관의 예외) ----- 보
관-----.

제45조(유류금품의 처리) ① ----
----- 건네받-----

-----.

② (현행과 같음)

제56조(위독 사실의 알림) (현행
과 같음)

제5장 접견,
편지수수(便紙授受) 및 전화통화

제64조(편지수수의 횡수) -----
----- 편지는 ----

-----.

제65조(편지 내용물의 확인) ① -
----- 편지를 -----
--- 편지를 -----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금지물품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신을 봉합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용자가 변호인 외의 자에게 서신을 보내려는 경우 가.·나. (생략)

2. 수용자가 같은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다른 수용자에게 서신을 보내려는 경우

3. 규율위반으로 조사 중이거나 징벌집행 중인 수용자가 다른 수용자에게 서신을 보내려는 경우

② 소장은 수용자에게 온 서신에 금지물품이 들어 있는지를 개봉하여 확인할 수 있다.

제66조(서신 내용의 검열) ① 소장은 법 제43조제4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용자가 다른 수용자와 서신을 주고받는 때에는 그 내용을 검열할 수 있다.

----- 편지를 -----

-----.

1. -----

----- 편지를 -----
가.·나. (현행과 같음)

2. -----

-- 편지를 -----

3. -----

----- 편지를 -----
--

② ----- 편지

-----.

제66조(편지 내용의 검열) ① ---

--- 편지를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u>서신을</u> 주고받으려는 수용자와 같은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때	2. <u>편지를</u> ----- ----- ---
3.·4. (생략)	3.·4. (현행과 같음)
② 수용자 간에 오가는 <u>서신에</u> 대한 제1항의 검열은 <u>서신을</u> 보내는 교정시설에서 한다.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u>서신을</u> 받는 교정시설에서도 할 수 있다.	② ----- <u>편지에</u> ----- <u>편지를</u> ----- ----- --- <u>편지를</u> ----- -----.
③ 소장은 수용자가 주고받는 <u>서신이</u> 법 제4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개봉한 후 검열할 수 있다.	③ ----- -- <u>편지가</u> ----- ----- -----.
④ 소장은 제3항에 따라 검열한 결과 <u>서신의</u> 내용이 법 제43조제5항의 발신 또는 수신 금지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u>발신서신</u> 은 봉합한 후 발송하고, <u>수신서신</u> 은 수용자에게 교부한다.	④ ----- --- <u>편지의</u> ----- ----- ----- <u>발신편지</u> 는 ----- <u>수신편지</u> 는 -----.
⑤ 소장은 <u>서신의</u> 내용을 검열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수용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주어야 한다.	⑤ ----- <u>편지</u> ----- ----- ----- -----.
제68조(<u>서신 등의 대서</u>) 소장은	제68조(<u>편지 등의 대서</u>) -----

수용자가 서신, 소송서류, 그 밖의 문서를 스스로 작성할 수 없어 대신 써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교도관이 대신 쓰게 할 수 있다.

제69조(서신 등 발송비용의 부담)

수용자의 서신·소송서류, 그 밖의 문서를 보내는 경우에 드는 비용은 수용자가 부담한다. 다만, 소장은 수용자가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제71조(참고사항의 기록) 교도관

은 수용자의 접견, 서신수수, 전화통화 등의 과정에서 수용자의 처우에 특히 참고할 사항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요지를 수용 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76조(문서·도화의 외부 발송

등) ① 소장은 수용자 본인이 작성 또는 집필한 문서나 도화를 외부에 보내거나 내가려고 할 때에는 그 내용을 확인하여 법 제4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허가

----- 편지-----

-----.

제69조(편지 등 발송비용의 부담)

----- 편지·소송서류----

-----.

-----.

제71조(참고사항의 기록) -----

----- 편지수수----

-----.

제76조(문서·도화의 외부 발송

등) ① -----

----- 도화

(圖畫)-----

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제128조의3(포상금의 지급 신청)

① 포상금을 받으려는 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지방교정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33조(징벌의 집행) ① (생략)

② 소장은 수용자가 징벌처분을 받아 접견, 서신수수 또는 전화통화가 제한된 경우에는 그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다만, 수용자가 통지를 원하지 아니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삭제

④ · ⑤ (생략)

제140조(가석방자 준수사항의 고지 등) 소장은 법 제122조제2항의 가석방 허가에 따라 수형자를 가석방하는 경우에는 가석방자 교육을 하고, 준수사항을 알려준 후 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28조의3(포상금의 지급 신청)

① ----- 사람은

-----.

② (현행과 같음)

제133조(징벌의 집행) ① (현행과 같음)

② -----
----- 편지수수 -----

--. ----- 알리는 것을

--.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140조(가석방자가 지켜야 할 사항의 알림 등) -----

----- 지켜야 할 사항

--.

제143조(석방예정자의 교정성적 등 통보) ① 소장은 석방될 수형자의 보호 및 재범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의 성격·교정성적 또는 보호에 관한 의견을 그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 또는 그를 인수하여 보호할 법인 또는 개인에게 통보할 수 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형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정성적 등을 통보하는 경우 「형사사법절차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통보할 수 있다.

제143조(석방예정자의 수용이력 등 통보) ① 법 제126조의2제2항에 따른 “수용이력”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수형자 특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민등록주소(또는 거소), 석방 후 거주지 주소
2. 수용이력에 관한 사항: 죄명, 범수, 형명, 형기, 석방종류, 최초입소일, 형기종료일, 출소일, 범죄개요, 기타 수용 중 특이사항으로서 해당 수형자의 재범방지, 피해자보호를 위해 특히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

② 법 제126조의2제2항에 따른 “사회복귀에 관한 의견”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수형자 특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민등록주소(또는 거소), 석방 후 거주지 주소
2. 사회복귀에 관한 의견: 수용기간 중 직업훈련 내역, 수상

	<u>이력, 학력변동사항, 자격증 취득에 관한 사항, 기타 해당 수형자의 자립지원을 위해 특 히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u>
<u><신 설></u>	<u>③ 석방예정자의 수용이력·사회 복귀에 관한 의견 통보서의 양 식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u>
<u><신 설></u>	<u>④ 석방예정자의 수용이력 또는 사회복귀에 관한 의견을 그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통보하는 경우,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 해 통보할 수 있다.</u>
제145조의2(<u>증명서의 교부</u>) 소장 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의 신청에 따라 교정시설에 수 용된 사실 또는 수용되었다가 석방된 사실에 관한 증명서를 <u>교부</u> 할 수 있다. 1. ~ 4. (생 략)	제145조의2(<u>증명서의 발급</u>) ----- ----- ----- ----- -- <u>발급</u> -----. 1. ~ 4. (현행과 같음)
제146조(<u>사망통지</u>) (생 략)	제146조(<u>사망 알림</u>) (현행과 같음)
제151조(교정위원) ①·② (생 략) ③ 교정위원의 임기, 위촉 및 해 촉, <u>준수사항</u> 등에 관하여 필요	제151조(교정위원) ①·② (현행 과 같음) ③ ----- --- <u>지켜야 할 사항</u> -----

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 --.
제152조(외부인사의 준수사항) (생략)	제152조(외부인사가 지켜야 할 사항)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법무부 교정기획과	
연 락 처	(02) 2110 - 3477